

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-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·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등 -

관세청에서 2023년 7월 27일에 공고한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이 확정되어 09월 0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I. 개정 사유

-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
-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·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(§17②)

- 은행 통·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(인감증명서 등) 제출 생략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(제17조) ① (생략)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 <단서 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(제17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경우 -----, 다만,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,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2.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(§18조의2 신설)

-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*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

* ① 수입원재료 모델·규격 단순 기재 오류,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(제18조의2)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,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. 1.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.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은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, 원재료 등이 다른 수출증빙번호(신고번호)의 물품, 다른 원재료 증빙번호(신고번호)의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세관장의 환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(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
3.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(§23②, §61④)

-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(제23조) ① (생략)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(제23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제>
<input type="checkbox"/>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(제61조) ① ~ ③ (생략)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(적재) 확인(신청)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(제61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삭제>

4.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(§32)

-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(개별환급 적용)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

-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,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(제32조)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가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(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, 공급을 포함한다)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 <단서 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(제32조) ① ----- <u>경우</u> -----. ④ <u>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-----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-----.</u> <u>다만,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
5. 수입세액분할증명서(분증) 발급 절차 개선(§54③)

-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(분증)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*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
- * ①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, ②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(제54조) ①·② (생략)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·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. <단서 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(제54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, <u>다만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.</u>

6. 기타 개선사항

- 환급신청인이 '통관고유번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'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(§4⑥)
- 외국무역선(기)→국제무역선(기) 용어 정비(§3조의② 등)

III. 시행일자

- 2023. 09. 01 (금)

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- [붙임 1] 개정이유_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- [붙임 2] 개정전문_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
| Contact



서경은 관세사
T 02-6011-3033
E kесеo@esein.co.kr



유호성 관세사
T 070-4353-1522
E hseyou@esein.co.kr